

공공폐수처리시설 시행자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

「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제64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부담금 및 사용료를 []조정 부과, []환급, []이의신청을 미수용 함을 알려드립니다.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통지내용		[] 조정 부과 [] 환 급 [] 미수용				
계	납부통지 금액	미 수 납부통지금액	[]조정 부과금 []환급금	[]조정부과 []환 급 결정일자	[]수 급 []환 급 은행 및 계좌번호	기 타
사 유 ([] 조정 부과 [] 환급 [] 이의신청 미수용):						
납부통지서 일련번호:						

끝.

발 신 명 의 직인

기안자(직위/직급) 서명 / 검토자(직위/직급) 서명 / 결재자(직위/직급) 서명
협조자(직위/직급) 서명
시행 처리과 - 일련번호 (시행일자) 접수 처리과명 - 일련번호 (접수일자)
우 주소 /홈페이지 주소
전화() 전송() /전자우편주소 /공개구분